2020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교육자료

2020. 5. 13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목차

1. 2020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방향

1-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 1

1-2. 2020년 사후관리 점검 방향 ····· 4

1-3. 최근 위반사례 ····· 8

2.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지도·점검

2-1. 2020년 지도·점검 계획 ····· 12

2-2. 주요 위반사례 ····· 15

1-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 의 의

○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괄하는 단계로 영향평가의 마지막 단계

□ 목 적

○ 협의내용 반영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 변화되는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영향 최소화
○ 협의 후 급박한 상황변화에 대처

□ 사후환경영향조사

○ 목 적
– 환경영향평가시 영향예측 결과와 실제 환경영향평가의 일치 여부 확인
– 착공 후 발생하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 방지

○ 조사 기간
– 영향 정도에 따라 공사 완료 시, 공사완료 후 3년 또는 5년 등으로 구분

○ 조사결과 제출 등
–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환경부고시 제2018-50호, 참조)
– 조사결과 피해발생 시 신속한 조치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참조)

1-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 평가협의 시 협의기관장이 제시한 항목(환경기준 비설정항목)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자원관, KEI,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기관 주요 검토 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통하여 평가 시 예측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환류체계 구축)
- 협의의견(보완서, 추가자료 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검토
- 협의의견 및 평가서 제시 내용이 현재 상황과의 차이점 및 개선방안
- 우수, 미흡 사례집 발간을 통해 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 최근 검토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가서 거짓·부실이 의심되는 사항을 지적

1-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관련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가이드라인 등 지침 숙지 후 작성

☞ 해양환경분야는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사업자가 수행(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협의기관의 검토의견 항목별 조치사항 반영결과 제시

○ 이행시기 미도래 협의 내용 : 이행계획 또는 설계 반영 내용 제시

○ 평가 시 항목별 영향예측 결과와 사후조사결과 체계적 비교 평가

○ 사후조사결과 환경기준 초과 등 중요사항 변화 시 원인분석 필요

☞ 환경기준 초과 원인을 외적요인으로 만 제시(구체적 조사 결과 제시 필요)

○ 조사계획 변경(시기, 횟수, 지점 등) → 승인기관 검토 후 변경 및 협의기관 통보

○ 해당년도 사업부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경사진 제시(ex 드론 촬영 등)

○ 에너지 사업 : 예비가동 시기를 사업개요 또는 현황에 명시

○ 산업단지, 도시개발의 경우는 환경 영향 확인을 위한 입주, 분양자료 제시

1-2. 2020년 사후관리 점검 방향

□ 2019년 사후관리 점검 결과

○ 점검 실적

점검 업소		조치내역		
평가	소규모	이행요청(건)	과태료(건)	고발(건)
128	23	15	7	3

○ 주요 위반사항

- 협의기준 초과 또는 협의내용 미이행 : 15건
- 변경협의 미이행 : 4건
- 관리책임자 통보 미이행 : 1건
- 공사 (재)착공 통보 미이행 : 1건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미통보 : 1건
- 환경영향평가 전 공사 실시 : 3건

1-2. 2020년 사후관리 점검 방향

1.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관련 위반 확인

1)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발 처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대상 및 기간을 준수할 것

※ 산업단지의 경우 ① 입주율 70%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부터 3년간 실시

②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 70% 미도달 시 7년이 되는 해에 실시(준공년도*부터 7년 산정)

* 예시> 2017년 12월 준공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2)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조사시기, 횟수, 지점, 항목 등 일부 누락)

☞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 부득이 조사일정, 횟수, 지점, 항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승인기관 협의 후 결과를 협의기관에 통보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기재할 것

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미통보

☞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 조사기간이 끝난 달부터 2달 이내 제출

1-2. 2020년 사후관리 점검 방향

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관련 위반 확인

1)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미제출

☞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0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제출

※ 단순 이동 중인 법정보호종 발견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은 조치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실을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한 후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수록

2)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미실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0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피해 방지 조치 후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수록할 것

1-2. 2020년 사후관리 점검 방향

3.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1) 협의 내용 관리대장 비치

☞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 협의 내용 이행 상황을 기록한 관리대장 사무실 비치

2) 관리책임자 선임 및 변경 시 통보

☞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 관리책임자 선임 및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통보

3)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한 협의내용 이행 여부

1-3. 최근 위반사례

◆ 사례① 사후환경영향조사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오인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 사업자 : 수사의뢰(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제1호, 제36조제1항 위반)

□ 산업단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시기

① 준공 후 입주율이 70%에 도달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실시

예시) 2019년 4월 기준 입주율 70%에 도달 →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조사

②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 입주율 70% 미달 시 그 해에 1년간 실시

예시) 2010년 12월 준공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준공년도부터 7년을 산정하며 2015년 12월까지 입주율 70% 미달 시 2016년 1년간 조사)

※ 기타 사업의 조사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1-3. 최근 위반사례

◆ 사례②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협의 당시 수립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나 항목·기간·지점 등 일부를 누락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 사업자 : 과태료(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제3항제1호, 제36조제1항 위반)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변경(주기, 횟수, 지점, 항목 등)

– 조사업체 계약 문제 등의 사유로 조사 일정, 횟수, 지점, 항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승인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후 변경하고 이를 협의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근거자료(변경 요청 및 승인 공문 등)를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첨부할 것

1-3. 최근 위반사례

◆사례③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협의기관의 장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통보하지 않음

⇒ 사업자 : 과태료(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제3항제2호, 제37조제2항 위반)

□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제출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0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제출

※ 단순 이동 중인 법정보호종 발견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은 조치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실을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할 것

□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미실시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0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피해 방지 조치 후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수록할 것

※ 조치계획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피해 발생 시 피해방지 조치 실시

1-3. 최근 위반사례

◆ 사례④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하지 않음

⇒ 사업자 : 과태료(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제4항제4호, 제37조제1항 위반)

□ 사업자 →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 사항

1. 착공 또는 준공, 3개월 이상 공사중지 : 사유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통보
2.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선임 및 변경 : 선임 및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통보
3.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 : 피해 발생 경우 즉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3일 이내 통보
4. 사업의 양도 · 상속 또는 합병에 의한 협의내용 이행 의무 승계 : 30일 이내 통보

2-1. 2020년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지도·점검 계획

□ 추진배경

○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기술인력 부족, 변경등록 미이행 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

○ 환경영향평가업 점검을 통해 적법 기술인력 유지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방지 등을 유도함으로써 평가서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보고·조사)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018-637호)

□ 세부계획

○ (기간) 2020.6월~11월

○ (기본방향)

- 자체 점검결과 등의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현장점검 실시(3.31, 서면자료 제출완료)
- 업체 방문을 통해 중점점검, 필요 시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사업부지 현장조사 병행
- 평가업자의 준수사항, 기술인력의 적정성 및 상근여부, 기초자료 보관의 적정성 등 점검

2-1. 2020년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지도·점검 계획

□ 위반유형별(평가업 등록관련)

1.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1) 등록증에 기재된 명단과 4대보험, 봉급대장 등으로 해당 인력의 실제 근무여부 확인

2) 기술인력이 상시근무하지 않는 경우

(1) 상시근무자란 : 소속회사의 근무시간에 항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함

(2) 기술인력의 부족에 해당하는 경우 :

- 고문형식으로 있으면서 가끔씩 출근하는 경우
- 자격만 대여하고 전혀 근무(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출산휴가·육아휴직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 법령에서 정한 기간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간

2.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1) 측정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험실 및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실험실 및 장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측정대행·제외항목 확인

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해당건물의 소유자 등을 건물 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

3.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 기술인력 등)이 없는 자와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2-1. 2020년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지도·점검 계획

□ 위반유형별(환경영향평가업자 준수사항 관련)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2)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는 제외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2-2.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요 위반사항

□ 주요 위반사항

○ 최근 7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위반 총 101건

○ 기술인력 부족, 변경등록 미이행이 88%로 위반 대부분을 차지

<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유형별 위반현황 >

연도	등록 업체수	위반유형							
		계	기술인력 부족	변경등록 미이행	기초자료 미보관	2년간 실적없음	거짓 작성	부실/복사 작성	기타*
		101	48(47.5%)	41(40.6%)	8(7.9%)	-	1(0.9%)	-	3(2.9%)
'13	37	9	2	3	4	-	-	-	-
'14	36	8	5	3	-	-	-	-	-
'15	37	15	9	4	2	-	-	-	-
'16	45	19	8	9	1	-	-	-	1
'17	45	4	3	1	-	-	-	-	-
'18	42	6	2	4	-	-	-	-	1
'19	41	35	16	16	1	-	1	-	1
'20.4	37	4	3	1	-	-	-	-	-

* 기타 : 정도검사 미실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미보고 등

2-2.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요 위반사항

□ 주요 위반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5. 측정대행업체 및 그 계약 내용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요 위반사항

□ 행정처분의 기준

○ 기술인력 부족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미만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	-

○ 변경등록 미이행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제4항제8호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과태료 500만원	

감 사 합 니 다.